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3. 24.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4. 1
다. 상정 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 기)
가. 제출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보강·확대됨에 따라 위원들에게 일비, 여비등을 변상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 출석시 일비 지급(안, 제2조)
• 인사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관련 안건으로 공무여행시, 국내여비규정상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급(안, 제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 건재)
○ 지방공무원법(1993·12·27 법률 제4613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를 추가하고 법관, 검사 및 교수등도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보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일비와 비용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유남렬 위원) : 동 인사위원회 위원 7명중 외부인이 2명인데 과연 공정성이 있겠는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예전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했으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것입니다.
• 질문(윤동현 위원) : 동 인사위원회 위원이 공무로 해외를 여행해도 여비가 지급되는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인사위원회 업무성격상 공무로 해외여행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의안 번호	283

제출년월일 : 1994. 3. 24.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구성 및 기능이 보강·확대됨에 따라 위원들에게 일비, 여비등 비용을 변상하

므로써 본 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 출석시 일비 지급(안, 제2조)
   ○ 인사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관련안건으로 공무여행시, 국내여비규정상 2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지급(안, 제3조)

3. 제안근거
   ○ 지방공무원법(1993·12·27 법률제4613호) 제7조 제4항
   ○ 지방자치법(1991·12·31 법률제4464호) 제15조
   ○ 인사 1106－350(1994·2·15.) 호 : 자치구조례준칙(안)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예산조치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3. 14.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4. 3. 16.
   다. 상정 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 기)
   가. 제 안 이 유
   •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나. 주 요 골 자
   •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협의회의 회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의회의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의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내지 제10조)
   • 협의회의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 건재)
   ○ 탈냉전 이후 세계무대에서의 무한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축이 자국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